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유연정

충북대학교 수목관심 · 수목사학자

지속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함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위험의 제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일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층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안전권, 취약계층, 위험수용기준

1. 서론

최근 과자와 유기농 냉동채소에서 죽은 동물의 일부가 발견되고, 참치캔에서는 녹슨 칼조각이 발견되는

등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비자안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경미한 개인적 신체손상에 그칠 수도 있으나 일부는 가전제품 폭발이나 약물중독, 기도손상 등 심각한 신체손상과 함께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 동반하게 된다. 압력밥솥 폭발사건이나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건, 휠리스 운동화를 타던 아동의 사망사건, 컴젤리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뇌손상을 입은 아동 사건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과 국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손해의 확대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리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후적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아직은 전시적 행정에 그치고 있고, 소비자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봉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 또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하여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비체계성은 그 제도와 역할 수행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안전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성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위험의 완전한 제거, 즉 100%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 대중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관리서비스라는 공공재를 구입한다. 이는 국가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책무 또한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은 계층과 라이프스타일, 가치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과 평가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수준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criterion)"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 시대의 생활안전관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소비자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사고를 경험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해요소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

생하는 사고를 개인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라 여기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사고발생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재은·유현정, 2007). 또한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일반 성인에게는 위험으로 인지되지 않는 요인들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들의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빈도가 높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일반 성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취약소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일반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생활안전관리는 계층별 특성에 따라 위해의 수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층별 안전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개념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본 연구가 이러한 작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특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체제를 정립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II.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안전의 개념

현대 사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위험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김영치, 1998 옮김). 위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안전(Safety)이란 사용영역에 따라 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며 그 범위 역시 해당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

로 넓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안전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반된 개념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본 독일 경제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7)은 그의 저서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에서 위험을 근대화 때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정의하며, 위험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벡은 위험이 갖는 특징을 첫째 위험의 보편성, 둘째 예측의 난해성, 셋째 회피해야 할 대상, 넷째 무한성, 다섯째 위험의 광범위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통해 벡은 현대사회를 객관적인 지구적 위험공동체라고 보고 있으며 위험이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의 특징을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비록 경제적으로 모든 재해에 대비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물질문명이다(강영석, 2004). 전통적인 사회와 초기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은 본질적이고 개인적이고 공개적이고, 명백하고 관찰 가능한 것이라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명백하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으며 조기에 발견되는 것은 물론 위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처럼 위험이 만연한 사회에서 완전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성이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서래, 1993; 이기춘, 1999). 이와 같은 안전의 정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은 그 사회가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제거를 위해 갖는 지불의사에 따라 안전의 수용기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1) 안전욕구의 상승과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 및 교육 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삶의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needs), 욕구(wants), 욕망(desire)이 크게 향상되었다. 즉 사회·문화·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문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위계설¹⁾에서 등장하는 안전의 욕구는 소비생활에 있어 욕구(wants)라기보다는 요구(needs)²⁾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국민생활안전 위기를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이재은·유현정(2007)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위협 영역으로 식품안전 영역, 보건/의·약품안전 영역, 생활경제안전 영역, 생활환경안전 영역을 들고 있다.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위기 영역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 첨가된 식품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유통 등이 속한다. 둘째, 보건/의·약품 위기 영역에는 국민 건강에 유해한 보건 및 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혹은 불법 수입·유통,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등이 속한다. 셋째, 생활경제위기 영역은 실업, 파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 경제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적 활동이 중단되는 현

1)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단계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단계의 욕구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다음단계의 욕구 또한 충족되면 그 다음단계의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2단계의 안전의 욕구는 현대사회에서는 단지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2) 요구(needs), 욕구(wants), 욕망(desire)에는 위계가 존재한다. 욕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충족되길 원하는 것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은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욕구는 생리적이거나 본능적인 수준의 말한다. 이에 반해 욕구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더 좋은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욕망은 욕구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갈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고픔(요구)의 본능적이 발동하였을 때 인간은 품질을 따지지 않고서 음식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단순히 배부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욕망이 촉발된다. 또한 맛과 질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음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상징을 표출하고자 한다.

상을 의미하며, 넷째, 생활환경위기 영역에는 국민을 둘러싼 환경의 오염이나 산업 및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한 유해 환경 조성 등이 속한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생활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과자와 냉동야채, 참치캔에서 불결한 이물질이 발견되고, 휴대폰배터리나 압력밥솥이 폭발하여 상해를 입는 등 일상 소비생활 속에서 노출되고 있는 위험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출된 피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잠재된 소비자문제들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할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재화를 불안 속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소비자는 Kallet과 Schlink(1993)가 그의 저서 「1억 만 마리 기니아피그(100,000,000 Guinea Pig)」에서 말했듯이 점점 신세기 기니아피그로 전락하고 있다³⁾.

이처럼 현대사회의 위험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의 산물이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종 위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소비생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 대중인 소비자는 소비생활안전관리서비스라는 공공재의 구입을 위해 세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재 구입과 마찬가지로 지불한 비용에 준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안전 상태를 보장받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생활안전관리서비스라는 공공재에 대한 납세자인 국민 즉 소비자⁴⁾가 보다 엄정히 서비스의 질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이 미시적으로는 부(wealth)와 마찬가지로 지위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는 상층에 축적되는 반면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Beck, 1997)는 점이다. 즉 위험은 부메랑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민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지만 상층은 이 위험을 경제력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하층보다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데 실패하는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빈도와 강도로 위험의 피해가 축적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비용을 수요자 혹은 사용자 지불원칙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Criteri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안전성의 개념을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그 사회의 안전의 수준도 달라진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써 보다 양질의 소비생활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국가에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정하여 대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규칙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Kallet과 Schlink는 그의 저서 「1억 만 마리 기니아피그」 기업이 실험도 거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무의식적인 소비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실험용 동물이 되어 버린 소비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실험용 동물이 되어 버린 소비자의 위치를 나타내며 소비자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이기춘, 1999).

4) 모든 국민은 곧 소비자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한 이후까지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삶은 소비라는 행위를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국민일반과 동일시된다.

(1) 서비스질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최근 공공서비스 즉, 행정서비스에서도 고객지향적 행정에의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상인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이들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박중훈, 2001; 장철영, 2007).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해 많이 사용되어 온 이론으로는 Oliver(1980)가 제시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expectation-disconfirmation paradigm)을 들 수 있다.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서 볼 때 서비스의 질은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되며, 이때 주어진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가 제공받아 지각한 서비스, 즉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두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Grönoos, 1990).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결과에 해당하는 성과가 사용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에 비해 높으면 긍정적 불일치가 생기면서 만족이 발생하고, 반대로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생겨 불만족하게 된다고 본다.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대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기대보다 제공된 서비스의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이를 지각된 성과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구조의 한계성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질 낮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제품에 대한 사전 기대와 그에 대한 성과는 일치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제품의 성과가 낮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의 사전기대가 매우 높아 성과에 대한 불일치가 높다 하더라도 제품의 성과가 월등히 뛰어나면 부정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dams(1963)의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에 근거한 공평성 패러다임은 시장에서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소비자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나 주변환경⁵⁾ 등에 의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소비자는 개인이 교환에 지출하는 비용과 예상된 보상간의 관계에 근거해 보상이 공평하다고 평가될 경우 만족에 이르는 반면 보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만족에 이르게 된다(유현정, 2000).

지금까지 살펴본 기대-불일치 패러다임과 지각된 성과 패러다임, 공평성 패러다임은 소비자의 만족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으로써 소비생활안전서비스를 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의 소비자 수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평가하는 규칙은 보상적 규칙과 비보상적 규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보상적 규칙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다속성모델(multiple attribute utility model)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기준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또는 가중평균 등의 방법을 거쳐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 규칙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을 접근해 보면, 소비자들이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의 속성들을 추출하여 열거한 후 이를 기준별로 평가하여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들을 통해 전반적인 위험의 수렴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점수를 산출할 경우 어느 한 속성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부여될 경우 합산된 점수가 왜곡되거나,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속성이 다른 속성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속성별 가중치를 두들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비보상적 규칙에 의한 대안 평가 방법은 어떤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을 보상해주지 못하는 상태로, 최고수준의 속성을 선택하거나 최저수준의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서비스를 채택하는 것이다. 비보상적

5)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라도 지역적 특성 즉, 도시의 발달정도(대도시이나 중소도시이나)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물리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가 만족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칙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는 다양한 위험의 속성들 중 반드시 제거되거나 회피되어야 할 속성을 취하여 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방법과 소비자들이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그 상한선보다 위인 즉 더 위험한 수준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비보상적 규칙은 위험의 속성이 산재한 현대사회에서 일부 속성만을 취하므로 관리되어야 할 나머지 속성들이 간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규범기대와 바람직한 가치의 측정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기준’은 안전사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지향적 태도, 즉 안전에 어떠한 가치를 두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의 개념은 크게 규범(normative)기대와 예측(predictive)기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규범기대는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수행이 각기 ‘반드시 이리러한 정도여야 한다(should be)’고 당위적 또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수준을 뜻하며, 예측기대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수행은 ‘이리러한 정도 일 것(would be)’이라고 예측하는 수준을 말한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가치(the desirable)’와 ‘바라는 가치(the desired)’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슈위츠는 ‘바람직한 가치’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측정할 반면 홉스테드(Hofstede, 2001)는 ‘바라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슈위츠(Schwartz)는 ‘바람직한 가치’에서 가치를 사람들의 생활지침으로 작용하는 중요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바람직하며 상황을 초월하는 목표로 정의하였으며, 홉스테드는 ‘바라는 가치’에서 가치를 선호 또는 실제의 존재 상태인 행동적 선호라고 정의하였다(Marieke de Mooij, 2004). 여기서 규범기대는 슈위츠의 ‘바람직한 가치’와, 예측기대는 홉스테드의 ‘바라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은 안전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기준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규범기대와 바람직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III.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안전에 대한 기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수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전통적 안보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fully) 만족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자 ‘소비자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7년 3월 25일). 소비자 안전 분야는 소비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해 있어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소비자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는 리콜제도나 안전검사제도 등이 있고 관련법도 식품위생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통합 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안전권 도입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제23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활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거나 소비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2006년 9월 27일 전문개정 되어 2007년부터 실효된 「소비자기본법」 제2장 제4조에서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인체 또는 재산 상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 제3조 1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1호에 의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동 시행령에서 제6장은 소비자안전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자 함을 의미한다. 시행령의 제6장 중 제34조에서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명 이상의 식중독으로 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제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훼손을 제조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6)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리콜제도라 함은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상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유통 중에 있는 결함 상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결함상품은 그 제품의 제작자나 수입업체가 유통된 해당 상품을 모두 수거·파기 하거나 수리·교환·환급하는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법

6) 위해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와 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있다.

이 재화의 안전성에 대한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인 반면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사전관리적 차원의 제도이다.

‘리콜제도’는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었으며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의 경우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비해 전문성이나 조직력이 떨어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결함을 밝혀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적절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면서 제시된 법이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기업이 밝혀내야하며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생명과 신체에 해당하는 피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후관리적 법안이지만 이 법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산품품질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은 공공이익과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품질표시제도, 품질검사제도, 공장품질관리 등급제도, 우수상품지정제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사 표시 제도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수상품 지정제도, 공장등급제도는 임의적 성격을 띤 장려제도이다.

이와 같이 공산품품질관리법 하에 소비자에게 해가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는 소비자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을 지정, 상품 별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안전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량 공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검사는 안전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나뉜다. 사전검사란, 안전위해성의 정도가 높아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 상품이 출고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불량품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적극적인 검사제도이다. 이때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는 「검」자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18개 품목이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후검사제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작은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후검사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제조업체 스스로 정부가 제정한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상품을 만들어 팔도록 하되 정부가 필요시 유통 중인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해 검사하고 그 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하는 제도이다. 현재 판유리, 물안경 텐트, 라이터, 가정용 헬스기구 등 32개 품목이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IV.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인류역사 이래 모든 문명 또는 사회는 인간에게(혹은 개인인 속한 집단에게) 있어 좀 더 유익한 미래를 가져다 주고자 노력했다. 설령 이것이 집단주의, 제국주의 등으로 인해 인류역사에게 참혹한 역사(수많은 전쟁-십자군 원정, 세계대전 등)를 안겨 주었다 할지라도 개인이 속한 집단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명분과 이득을 위해 행해진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이었다. 한 사회 즉 국가가 대외적 또는 대내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의 명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획득을 통한 인간 삶의 질 또는 복지 증진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사회적 활동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켜줄 수 없으며,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우리는 '취약계층'이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자본에 소외된 계층은 일정 집단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소외된 계층이 곧 '취약계층'으로 귀결된다.

취약계층이란 취약성을 지는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취약성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발달 단계에서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부정적 특성을 의미한다. 즉 가난, 노령, 저학력,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음 등이 분명한 건강상 위험요인이며(Tripp-Reimer, 1999), 그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병율과 사망률이 높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취약적 특성을 보인다(Anderson, 2000).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는 자본에 소외된 저소득층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구조상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학력, 기능, 직업면에서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지위가 하락하여 빈곤과 실업의 덫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최영미, 2005).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큰 맹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가 점점 정보화를 거쳐 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분명해 진다. 정보를 가진자 즉 고학력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고학력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사는 오늘날 더욱 분명해 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취약계층의 붕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많은 범죄나 자살, 노숙자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으며, 고학력자나 고소득층 등이 기피하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3D 업종에 많은 취약계층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분인 이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취약계층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연령에 근거하여 설정한 것이다(이인숙, 2004).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접근하는 시도에 따라 그 계층은 다양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취약계층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살펴봄으로써 국민안전권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취약성

취약성의 개념모형을 정리한 전경숙 외 5인(2007)에 따르면 취약성에 대한 개념 모형은 크게 개인차원의 개념모형과 다수준 차원의 개념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차원의 개념모형에는 개인결정요인모형과 개인의 사회자원 모형, 개인 보건형태 모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이 있다.

개인결정요인모형(Individual Determinant Model)은 취약계층을 타고난 특정 인구 집단으로 정의하며 연령, 성, 인종, 민족성, 교육, 소득 및 생활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Rogers, 1997). 여기서 성별은 분류목적에 따라 취약 인구집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취약한 상태일 수 있으며, 남성은 짧은 평균 수명, 높은 사망률로 인해 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자원 모형(Individual Social Resource Model)은 연령, 성, 인종 등 인구학적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른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에 따라 상대적인 취약성을 가진다는 개념(Aday, 1993)으로 특정한 사회 및 개인의 부족으로부터 위험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지위(social status),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자원 모형의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보건형태 모형(Individual health behavior Model)은 취약계층이 건강 증진행위 실천률이 낮고, 흡연이나 음주 및 약물중독과 같은 건강에 위험한 행위를 더 하여 건강 격차를 만든다는 개념 모형이다(Lantz 등, 1998)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Model)은 건강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낮은 사회경제수준의 개인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위한 자원이 제한적이며, 보건의료접근성도 낮다는데 기인한 모델이다.

다음으로 다수준의 개념모형에는 지역사회 사회자원 모형, 지역사회 환경 노출 모형, 개인 및 지역사회 상호작용 모형, 포괄적 접근 모형이 있다.

지역사회 사회자원모형(Community Social Resource Model)은 취약성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 의지 문제가 아니며(Flaskerud와 Winslow,1998), 취약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노출 모형(Community Environmental Exposure Model)은 취약성을 생산하는 지역 사회의 영향을 하나도, 건강에 위해한 환경에의 노출이 잠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등 고위험환경에 노출된다(Power와 Matthew, 1997).

개인 및 지역 사회 상호작용 모델(Individual and community Interaction Model)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의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모형으로(Aday, 1993), 개인 수준의 자원은 사회위치, 사회자본, 인적자본 및 건

강요구이며 지역 사회 수준의 자원은 응집력, 이웃의 특성, 지역사회 건강요구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접근 모형(Shi와 Stevens, 2005)은 개인, 사회, 지역사회와의 위험과 보건으로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관련하여 '취약성'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다.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1) 법·제도적 접근

소비자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통요금감면대상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노인, 장애인, 보호대상(상이군경, 독립유공자,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률인 노인복지법(제 26조: 경로우대,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 8조: 통행료지우의 대상 등)에 준한 것이다(고경환, 2005).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로스쿨 설립준비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개교가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요강을 7일 확정, 발표한 입시요강에 의하면, 모집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한국일보, 2008년 4월 8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적 접근

이석호(2007)는 '보험사의 공익성과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에서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노력 및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취약계층으로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

층을 들고 있음 그중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많은 신문기사들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다소 접근에 차이는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접근의 차이는 대상을 명명하는데 일정한 차이를 주고 있으나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집단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기사에서 나타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에서는 취약계층을 노인(고령자, 어르신 등으로 명명), 장애인, 아동(영유아 포함),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저소득층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데일리안 2008년 4월 3일; 조선일보 2008년 4월 3일 등).

둘째, 정보취약계층으로는 정보소외자, 저학력자, 고령자, 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년 4월 11일; 전자신문 2008년 4월 9일).

셋째, 보건취약계층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소외지역주민 등으로 구분한다(뉴스시스 2008년 4월 13일; 파이낸셜뉴스 2008년 4월 11일; 대전일보 2008년 4월 2일; 매일신문 2008년 4월 2일; 뉴스시스 2003년 3월 29일 등).

넷째, 정신취약계층은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대표적이다(동아일보 2008년 3월 31일 등).

다섯째, 문화소외계층은 소외지역주민으로 대부분 농어촌이 여기 해당되었다(연합뉴스 2008년 3월 2일 등).

3) 학문적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인숙(2004)의 '취약계층의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취약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과 연령적 취약계층으로 나누었으며, 김정은과 이재인(2006)의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가족을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경용 외 7인(2007)의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에서는 산재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를 들고 있으며 특히, 용역근로, 파견근로, 호출근로 등이 그중에서도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접근		
법·제도적	*관련법률·노인, 아동, 장애인 *교통요금감면·노인, 장애인, 보훈대상 *경제적 취약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 등 *신체적 취약자·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사회적	*전반적 취약계층·노인(고령자, 어르신 등으로 명명), 장애인, 아동(영유아 포함), 저소득층(경제적 취약계층) *보훈취약계층·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 *취업취약계층·비정규직 종사자,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하청노동자, 농어민 *정보취약계층·정보 소외자, 저학력자, 고령자, 아동 등 *보건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임신부·영아 *정신취약계층·우울증 *문화취약계층·소외지역(대부분 농어촌 주민)		
학문적	*이인숙(2004)-경제적 취약계층과 연령적 취약계층 *김정은과 이재인(2006)-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이경용 외 7인(2007)-산재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종사자(특히, 용역근로, 파견근로, 호출근로 등)		
종합	신체적 취약계층	보건취약계층, 정신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임신부·영아, 우울증환자,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경제적 취약계층	저소득층(=경제적 취약계층), 보훈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비정규직 종사자,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하청노동자, 농어민,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 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
	정보적 취약계층	문화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소외지역(대부분 농어촌 주민), 정보 소외자, 저학력자, 고령자, 아동 등

이를 종합해보면 취약계층은 크게 신체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정신적 취약계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분류는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세부 집단을 살펴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취약계층이 곧 경제제적 취약계층이자, 정보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이 이 모든 계층에 속하고 있어 취약성의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한 집단으로 집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 안전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지며,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V.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개념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정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권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에 있어 안전의 개념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서 비용과 효용의 효율성을 비교, 수용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개념인 동시에 대상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판단에 의해 안전할 권리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이 비용만 초래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7)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추진할 계획이었던 '소비자안전법(가칭)'이 사업자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무시 혹은 외면하는 판단인 동시에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미 '안전'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매일매일 넘쳐나는 혁신품에 이미 식상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이야말로 그 어떤 속성보다 매력적인 구매유인요소가 된다. 또한 FTA가 날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돌입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충족시키는 품질관리가 기본이며, 그 중 안전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국내 소비자안전 기준의 상향조정 및 강력한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 분야는 각종 제도나

7) 이재은·유현정(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방안 모색,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2호, 1-17.에서 일부 발췌.

법령에 산재해 있어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소비자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오랜 진통 끝에 국내에서도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 6,109호)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조자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민법과의 차별점이란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제조자가 밝혀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했지만,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가 결함없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안전에 새로운 기원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부족과 소비자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 칼조각이 든 참치캔, 생쥐가 든 유기농 냉동야채 등 식품관련 위생사고가 빈발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송제도가 반드시 함께 보완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소송제로서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이 결함있는 제품으로 밝혀지고 그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증명되면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었으나,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다양한 핸디캡으로 인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도 보상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제조자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적어도 식의약품에 있어서만이라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제조물책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면 안전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완전한 안전이란 즉 100% 위험의 제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이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안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안전법 제정 및 안전세 도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요한 전제는, 안전에 대한 요구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측정,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담당기관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중국산 조지에서 납이 발견되고 역시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었을 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감기약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PPA성분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등등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된 기관에서는 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시민에게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기 보다는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정보전달을 막고 은폐하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 산출이 많았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에 대한 원천적 불신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후의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적지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행정기관의 서비스 질을 엄정히 평가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씻고 아울러 대상 기관으로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민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안전 주체나 대상을 매년 지정하여 '생활안전의 해'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009년은 노인안전의 해, 2010년은 보행자 안전의 해 등으로 정하고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 파악 및 발전 방안의 마련, 특정한 날이나 주간을 안전의 날 또는 안전의 주간으로 정하여 국민 안전의식의 함양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활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민생활안전대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지고, 범국민 차원에서 '안전사고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 전국민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안전추구 행동 역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안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또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노출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의 안전관리 제도 및 행정 체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김혜금, 2006: 97). 즉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있는 능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안전 정책이나 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방송 매체의 선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안전 교육의 특성상 교육서비스의 양과 깊이(richness)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reach)의 측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로서 방송매체를 고려할 수 있다. 방송매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송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교육의 대상별로 취약 계층, 특히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및 미취학아동 보육시설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의 의무화⁸⁾와 노인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노인정 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하⁹⁾다.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별보호제도를 마련한다.

첫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 발생시 해당 급식업체 뿐만 아니라 학원장 및 학교장도 동반 책임을 지도록 하며,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급식업체 선정에 따르는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둘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기 등을 사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노인소비자교육, 효도 관광 등의 명목으로 불량제품을 강매하는 악덕상술을 강력 처벌한다.

셋째, 장애인용 필수품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며, 대신에 품질수준을 엄격히 단속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제로화한다.

넷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저가의 열등재를 선호할 수 있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최저수준을 책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수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최저수준의 제품 생산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연탄가

8) 이를 위해서는 교사로 하여금 각종 안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면서 유아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어린이 집에서 유아 안전교육을 잘, 그리고 자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사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부족(48.5%), 활용할만한 교육자료의 부족(30.7%), 시간 부족(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사의 안전관련 지식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안전교육 자료의 부족이 유아 안전교육의 주요 장애요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혜금, 2002: 307).

9) 노인은 어린이와 달리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신경림·김정선·신수진, 2004: 54).

스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연단 한 장 판매시마다 정부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 근처의 문구점이나 노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및 불량 장난감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시 단속하도록 한다.

VI. 결론

경제적, 기술적 진보는 인간에게 편리함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에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에 대한 불만족을 안겨주었고, 이는 또 다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어 주었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을 향유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발전의 속도와 도전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이 언제나, 늘, 일정정도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안전의 문제는 어찌보면 평균적 발전 속도에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뒤쳐진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주장되어야 할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일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상층의 수준을 더욱 높이 끌어 올리거나 하층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법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평균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21세기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 후자라는 것이다. 평균의 향상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기준, 즉 커트라인의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석. 2004. 우리나라 도시의 재해위험과 대책.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재단 창립 27주년 기념 심포지움. 「위험재난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21-146.

▷ 고경환. 2005.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77-200.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4. 식품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 교통사고 취약구간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사무처.

▷ 김영치. 1998. 위험사회와 건강의 새 지평. 계간 사상. 10(3):

222-246.

▷ 박중훈. 2001. 특집 : 정책평가와 정부업무 평가제도 :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행정연구. 10(1): 40-68.

▷ 신경림·김정선·신수진. 2004.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회보. 24(4): 53-67.

▷ 연합뉴스. 2007년 3월 25일.

▷ 율리히 백, 홍성태·윤희경.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도서출판 새물결.

▷ 유현정. 2000. 인터넷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모델: 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용 외 7인. 2007.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 산업보건. 제230권: 58-59.

▷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 이서래. 1993. 식품의 안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석호. 2007. 보험사의 공익성과 보험취약계층. 한국금융연수원, 주간금융브리프. 16(9): 3-9.

▷ 이민숙. 2004. 취약계층의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특성. 대한간호학회지. 34(6): 1025-1034.

▷ 이재은. 1998.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0(1): 113-130.

▷ 이재은·유현정·안철한·정병윤. 2007.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3): 277-299.

▷ 이재은·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7.

▷ 장철영. 2007. e-서비스(e-SERVQUAL) 요인을 이용한 전자정부 e-행정서비스 질 평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9(2): 367-404.

▷ 전경숙 외 5인. 2007.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3): 99-118.

▷ 최영미. 2005. 취약계층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실태. 도시와 빈곤. 제 77권: 28-5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의약품 안전관리 기본제도 개선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원. '05 식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한국소비자원

▷ 행정자치부. 2004. 어린이보호구역 및 지방관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발전방안 최종보고서.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2007.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개발 및 운영방안. 행정자치부.

▷ Adams, J, Stacy. 196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November): 422-436.

▷ Anderson, K. H. 2000. The family health system approach to family system nursing. *Journal of Family Nursing*. 6(2): 103-119.

▷ Devroey, Dirk, Viviane Van Casteren, and Denise Walckiers. 2002. The Added Value of the Registration of Home Accidents in General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Primary Health Care*. 20: 113-117.

▷ Douglas, M. and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 Grönoos, C. 1990. *Service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ing the Truth in Service Competition*. Lexington Book. co.

▷ Marieke de Mooij. 2004. *Consumer Behavior and Culture*. Sage Publications, Inc.

▷ Oliver.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September): 460-469.

▷ Tripp-Reimer, T. 1999. *Critical health needs of commod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Critical nursing research for vulnerable population. In A. S. Hinshaw, S. L. Feetham & J. L.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조물책임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뉴시스 2008년 4월 13일, 광주서구 보건의료 서비스눈길

▷ 연합뉴스 2008년 4월 11일, 진안군 '중고PC보내기' 사업정착

▷ 파이낸셜뉴스 2008년 4월 11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 매일신문 2008년 4월 10일,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교육 실시

▷ 전자신문 2008년 4월 9일, 정보문화진흥원 한국MS와 정보화 협력

▷ 국민일보 2008년 4월 9일, 고난의 행군을 아시나요

▷ 데일리안 2008년 4월 3일, 하남 고용촉진 훈련생 20명 모집

▷ 조선일보 2008년 4월 3일, 붉은 머리끈 풀고 노사 상생 향해 운동화 끈 매자

▷ 대전일보 2008년 4월 2일, 보건의료 취약계층 제로에 도전

▷ 매일신문 2008년 4월 2일, 대구시 구청 보건 의 달 맛이 다양한 행사 준비

▷ 시민일보 2008년 4월 1일, 동대문구 안전문화운동캠페인 4일 전개

▷ 동아일보 2008년 3월 31일, 한림-NYP-컬럼비아-코벨 국제심포지엄 외

▷ 뉴시스 2008년 3월 29일, 예천군 저소득층 대상 5대 암검진 실시

석”(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방안”(2008), “21세기 신소비자주권시대를 위한 탐색과 고찰: 소비자정보격차의 실태(2008)”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yoohj@chungbuk.ac.kr).

접수번호: #080911-01

접수일자: 2008. 09. 11.

심사완료: 2008. 12. 15.

俞炫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모델-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및 정책 등이며, 소비자투자와 보험(공저, 2006) 등의 저서와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